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승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418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16.

발 의 자 : 백승주 · 박명재 · 김석기
박순자 · 유민봉 · 김영우
이완영 · 송희경 · 최교일
엄용수 · 정운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단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주력산업의 쇠퇴,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부족, 기반 시설의 낙후, 근로자 정주여건 미흡 등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. 이에 대처하고자 국토교통부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업입지법”이라고 함)에 따라 ‘산업단지 재생사업’을, 산업통상자원부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업집적법”이라고 함)에 따라 ‘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’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.

재생사업은 광범위한 재생지구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하고 재정비하는 것이고, 구조고도화사업은 연구개발혁신센터와 같이 산업단지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자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. 그러나 산업집적법에 재생사업 지역으로 수립·고시된 지역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된다

는 중복금지 조항이 있어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‘재생계획상의 지역’에서 그 일부분인 ‘재생사업 활성화 구역’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2제4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제4항제1호 중 “제39조의2제5항”을 “제39조의12”로, “수립·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)”을 “지정된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5조의2(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<u>수립·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)</u>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⑤ ~ ⑨ (생 략)</p>	<p>제45조의2(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<u>제39조의12</u>-----지정된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⑨ (현행과 같음)</p>